



# 선거 운동 금지!



**특정 후보자, 정당 또는 투표용지에 기재된 주민투표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표시물을 착용하거나 전시하고 투표소에 입장하거나 투표소 외부 출입구 또는 투표용지 투입함에서 100 피트 이내(또는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운동 금지 범위를 확대한 경우, 200피트 이내)에 서 있지 마십시오. 후보자, 정당 또는 주민투표안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으로 읽히거나 보여지는 정치적 배지, 버튼, 휘장, 티셔츠, 모자 또는 기타 전시물은 이 투표소에서 금지됩니다. 이 금지 규정은 투표용지 투입함에도 적용되며, 모든 선거에 해당됩니다.**

**19:34-15. a.** 투표소나 투표실 내부 또는 이러한 투표소나 투표실 외부 출입구 또는 선거 기간 중 사용되는 투표용지 투입함으로부터 100피트 이내에서 특정 후보자, 정당 또는 주민투표안에 대한 전단이나 인쇄물을 배포 또는 전시하거나 의견을 제안하거나 지지를 요청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b.** 각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본 조의 a항에 규정된 선거운동 금지 범위를 투표소나 투표실의 외부 출입구 또는 카운티 내에서 선거 기간 중 사용되는 투표용지 투입함으로부터 200피트 이내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각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금지를 시행하기 전에, 투표소, 투표실 또는 투표용지 투입함 외부에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명확하고 눈에 띄는 공지문을 게시해야 하며, 여기에는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가 본 항에 따라 정한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19:34-19.** 본 규정에 따라 카운티 위원회에서 제공한 배지를 제외하고, 예비 선거, 본선거, 특별선거 또는 기타 위원회 정부 선거일에 투표소 또는 투표실 내부나 투표소 외부 출입구의 100피트 이내에서 착용할 정치적 배지, 버튼, 기타 휘장을 전시, 판매, 제공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